

# 댄서스잡마켓

## : 활동온라인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제출 유의사항

## 01 성폭력예방교육이수증

\*해당년도 이수증 제출

## 02 공연출연료 지원신청서

\*마이페이지>지원신청내역>지원신청서 인쇄

\*무용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기재

\*대표자 직인(없을 경우 서명) 날인

## 03 공연완료확인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무용수 성명 기재

\*대표자 직인(없을 경우 서명) 날인

## 04 단체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한 단체명과 사업자등록증의 단체명  
동일해야함

## 05 신분증/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가리지 않고 제출

\*지원금 지급받으실 무용수 본인 명의의 통장

## 06 단원명단

\*해당년도 단원명단 제출

## 07 공연출연계약서사본

\*2페이지 참고

## 08 무용수공연사진

\*지원받는 무용수가 나와있는 공연사진

## 09 공연프로그램

\*로고 삽입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합동오디션 이전에 진행한 공연은 공연영상에  
로고 삽입하여 제출

## 10 공연영상

\*영상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 불가능할 경우  
영상 링크 제출

## 11 공공기금지원 결정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외의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관 및 지원금액이  
나와있는 서류 제출  
(결정서, 공문, 계약서 등으로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연출연계약서 사본

## \*계약년도 확인

## \*같은 페이지끼리 간인

\*예시 이미지와 동일하게 스캔하여 업로드

## (무용단, 무용수 소유의 모든 계약서)

<p><b>공연 출연 계약서</b></p> <p>(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PROFESSIONAL DANCE DEVELOPMENT CENTER</p> <p>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한 [2024] 댄서스잡마켓에 참가한 단체인 "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지원자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1. "댄서스잡마켓"이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무용수와 무용단체들을 연결하여 공개 오디션을 통해 무용단체의 다양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주는 오디션을 말한다.      2.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댄서스잡마켓"을 통해 무용수를 선발하기 위해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3. "댄서스잡마켓 지원자"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댄서스잡마켓"을 통해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의 작품에 참여하고자 참여한 무용수를 말한다.</p> <p>제3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24] _____. 부터 [2024] _____. 까지로 한다.</p> <p>제4조 ("을"의 단원구분) "갑"은 "을"을 _____으로 계약한다.</p> <p>제5조 (공연출연료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수당을 제공한다.      1. 공연출연료 : _____원          (단, 공연출연료 중 ₩1,000,000원(세금포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원금으로 처리한다)      2. 기타 혜택 : _____</p> <p>제6조 (권리와 의무)      1. "갑"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갑"은 "을"에게 연습시간 및 공연일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에게 적절한 연습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갑"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도자료, 인터뷰, 사진촬영 등을 하 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동 자료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 "갑"은 "을"에 대하여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의 작품에 관한 계약교섭 및 체결, 기타 무용 활동의 수행 및 상담 권한을 갖는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을"은 "갑"이 공지한 연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센터"의 보도자료, 인터뷰, 사진촬영 등 홍보자료에 무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및 "갑"이 동 자료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다. "을"은 자기의 재능, 실력 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갑"의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을"은 작품 참여 중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손해 등에 대하여 "갑"이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의 적절한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 "갑" 또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발언이나 언행              (3)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4) 무용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p>	<p><b>공연 출연 계약서</b></p> <p>(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PROFESSIONAL DANCE DEVELOPMENT CENTER</p> <p>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한 [2024] 댄서스잡마켓에 참가한 단체인 "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지원자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p> <p>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1. "댄서스잡마켓"이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무용수와 무용단체들을 연결하여 공개 오디션을 통해 무용단체의 다양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주는 오디션을 말한다.      2.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댄서스잡마켓"을 통해 무용수를 선발하기 위해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3. "댄서스잡마켓 지원자"라 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댄서스잡마켓"을 통해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의 작품에 참여하고자 참여한 무용수를 말한다.</p> <p>제3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24] _____. 부터 [2024] _____. 까지로 한다.</p> <p>제4조 ("을"의 단원구분) "갑"은 "을"을 _____으로 계약한다.</p> <p>제5조 (공연출연료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수당을 제공한다.      1. 공연출연료 : _____원          (단, 공연출연료 중 ₩1,000,000원(세금포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원금으로 처리한다)      2. 기타 혜택 : _____</p> <p>제6조 (권리와 의무)      1. "갑"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갑"은 "을"에게 연습시간 및 공연일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에게 적절한 연습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갑"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도자료, 인터뷰, 사진촬영 등을 하 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동 자료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 "갑"은 "을"에 대하여 "댄서스잡마켓 참가단체"의 작품에 관한 계약교섭 및 체결, 기타 무용 활동의 수행 및 상담 권한을 갖는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을"은 "갑"이 공지한 연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센터"의 보도자료, 인터뷰, 사진촬영 등 홍보자료에 무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및 "갑"이 동 자료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다. "을"은 자기의 재능, 실력 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갑"의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을"은 작품 참여 중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손해 등에 대하여 "갑"이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의 적절한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 "갑" 또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발언이나 언행              (3)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4) 무용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p>
---	---